

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2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조상호, 권수정, 김경영,
김경우, 김제리, 김화숙,
노승재, 박기재, 이영실,
이정인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의 실무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에 필요한 배치인력의 실무기준을 완화하고자 함. (안 제7조제2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 중 “5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가. 관계법령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(첨부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교육장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간호사(구급활동,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<u>5년</u>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)</p> <p>3. (생 략)</p>	<p>제7조(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3년</u>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